

품질검사의 방법·절차(제45조의2제2항 관련)

1. 검사시기

가. 고압가스제조자

생산공장에서 보관 중인 영 제15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

나. 고압가스 수입업자

영 제15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를 수입하여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·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고압가스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

2. 시료채취와 시험방법

가. 검사시료는 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른 한국산업표준(KS)[이하 "한국산업표준(KS)"이라 한다]의 시료채취방법에 준해서 채취한다.

나. 시험방법

- 1) 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(KS)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른다. 다만, 한국산업표준(KS)에서 정한 것보다 개선된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방법에 따를 수 있다.
- 2) 한국산업표준(KS)에 시험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른다.

3. 검사결과의 처리

가.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처리

- 1) 검사 결과 고압가스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, 맞지 않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고,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결과를 해당 고압가스 제조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에게 알려야 한다.
- 2)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불합격판정을 통보받은 자는 해당 고압가스의 판매나 인도를 중지하고, 이미 판매되거나 인도된 고압가스(자동차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는 제외한다)를 회수하며, 보관 중인 고압가스에 대한 품질 보정 등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.
- 3) 품질검사기관은 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·

군수·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

나.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고압가스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정상,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품질저하로 각각 판정한다.

다.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은 그 검사결과를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기록대장에 기록하고, 이를 각 시료별 품질검사성적서와 함께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라. 품질검사기관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적은 별지 제32호의4서식에 따른 품질검사 실적 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4. 그 밖의 사항

품질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